등록번호	여성가족과-23973
등록일자	2026. 11. 4.
결재일자	2026. 11. 4.
공개여부	비공개(5)

주무관	청소년팀장	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국장		
김수진	문정	윤순희	전결 2026. 11. 4. 김정인		
협 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

2026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고 양 시

[여성가족과]

2026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 고양시청소년재단 관리 운영 실태, 효율성 제고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도 점검 실시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법 제25조(지도·감독 등), 제26조(감사·보고 등), - 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및 제11조(검사·보고 등)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지도감독)

2. 지도점검 배경 및 목적

고양시청소년재단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고 예산낭비 요인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청소년재단을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점검 실시 과정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단에 사전 자료를 요구·점검하였으며, 2026.10.26. ~ 29.까지 청소년팀 직원 2명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음.

4. 중점 점검 분야

이번 지도점검은 재단 주요 규정 및 규칙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 인사·조직·예산·회계 분야 업무추진의 합리성 및 적정성 등을 위주로 점검하였으며 개선방향을 찾고 사전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II 지도 점검 결과

1. 총 평

○ 청소년정책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청소년 활동 진흥, 육성·보호·복지·상담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청소년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특히 올해에는 청소년 참여기구 공동선언, 찾아가는 상담 거점 확충,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학 지원 및 공유학교 AI 거점 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미래교육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교육부장관상·성평등가족부장관상 등 상반기 총 27건의 수상을 통해 청소년 지원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

○ 공모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재원 다각화와 사업 기반 확대

2026년도 공모사업 총 14개에 선정되어 사업비 407,640천원과 후원금 32,122천원 등 총 439,762천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음. 정부의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고양교육지원청의 공유학교 공모사업 등을 통해 공공외교·디지털·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재원을 다각화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 운영 기반을 확대하였음.

○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규정 및 관리체계 점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재단의 복무·인사·회계 업무 등 전반을 살펴본 결과, 병가 증빙서류 확인과 휴직자 복무상황 관리, 직무대리 운영기준 및 미사용 법인카드 관리 등에서 일부 미흡사항이 확인되었음. 이에 주의 1건·권고 3건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업무절차 정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동일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2. 지적 사항 총괄 : 4건

3. 지적사항 일람표

(단위 : 건)

합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4	-	1	-	3	-

4. 지적사항 세부내용

구분	건명 및 요약	조치요구
복무	병가 승인 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	주의
	복직 시 휴직자 복무상황 확인절차 보완	권고
인사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권고
회계	미사용 법인카드 관리 강화	권고

1) 병가 승인 시 증빙서류 확인 미흡

○ **관련 법령 및 규정**: 고양시청소년재단 「복무규정」 제21조(병가) 제3항 및 제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원 복무관리지침」

▶ **지적사항**: 재단 「복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까지인 경우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직원 2명의 각 1일 병가에 대하여 해당 서류 대신 진료비 영수증·처방전을 제출받고도 정해진 증빙서류를 보완받지 않은 채 병가를 승인하는 등 증빙서류 확인이 미흡하였음.

처분 요구	해당 병가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완받아 병가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병가 승인 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직원에게 관련 기준을 안내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복직 시 휴직자 복무상황 확인절차 보완

○ **관련 법령 및 규정**: 고양시청소년재단 「복무규정」 제29조(휴직자의 의무), 제30조의2(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 및 제30조의3(휴직실태 점검),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원 복무관리지침」 중 휴직자 복무관리 사항

▶ **지적사항**: 재단은 「복무규정」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분기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해외출국 여부에 관한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복직 시 휴직기간 중 해외체류 여부와 체류기간·사유 등을 확인하여 휴직 목적 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처분 요구	기존 국외 출국 신고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 대상·범위 및 절차를 복무관리지침에 마련**하고,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사유와 휴직 목적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 요구"**

3)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및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고양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24조(직무대행), 「직제 및 위임전결 규정」 제9조(전결사항) 및 제10조(부재시 결재), 「사무관리규정」 제5조(사무의 인계·인수)

▶ **지적사항**: 상급자의 결원·부재 시 직무대행과 결재 및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본 조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직무대리자의 지정 순서와 예외적 지정기준, 지정권자·지정방법·대리기간 및 권한·책임 등 세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정기준의 명확성과 업무의 연속성·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처분 요구	기존 정관 및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직무대리자의 지정 순서, 예외적 지정기준·절차, 지정권자·지정방법, 대리기간 및 권한·책임 등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정 사유·기간·업무 범위를 문서화하며 사무 인계·인수 절차와 연계하여 **직무대리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 요구"**

4) 미사용 법인카드 관리 강화

○ **관련 법령 및 규정**: 「예산·회계규정」 제13조제1항(회계관계직원의 책임)

▶ **지적사항**: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법인카드 보유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130매 중 점검 대상기간에 사용한 카드는 92매,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38매로 확인됨. 사업 미운영 및 사업주체·재원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 보유 필요성과 향후 사용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관·정리 및 해지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처분 요구	**미사용 법인카드의 최종 사용일·보관 상태·관리책임자 및 비용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보유 필요성이 없는 카드는 미결제금액·환불 등 잔여 처리사항을 정리한 후 해지하여 관리대장에 반영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정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 요구"**

Ⅲ 향후 계획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단으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고,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 관리 예정